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4. 11. 26.(화)

검토안건	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안일 : 2024. 11. 15.
- 회부일 : 2024. 11. 18. (의안번호 : 24-163)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2. 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및 확대
(안 제2조 제1호, 제3호)
- 나. 조문정비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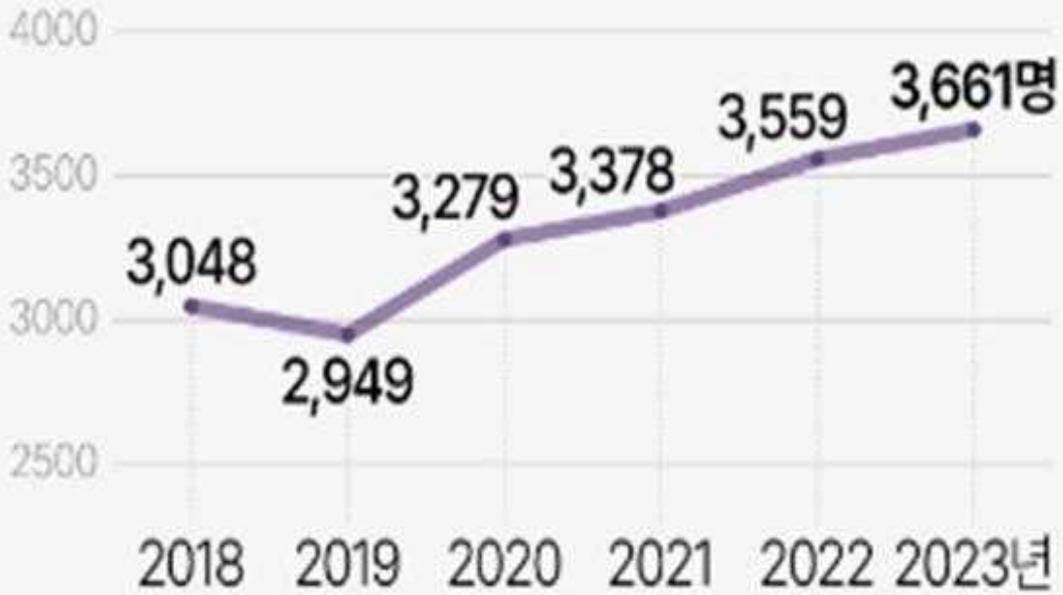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하고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위에 발견되는 죽음”을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같은 조 제3호에서는 “1인 가구”를 “가구”로
 - 제4조에서는 “고립 가구”를 “고립가구”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관계법령 또는”을 추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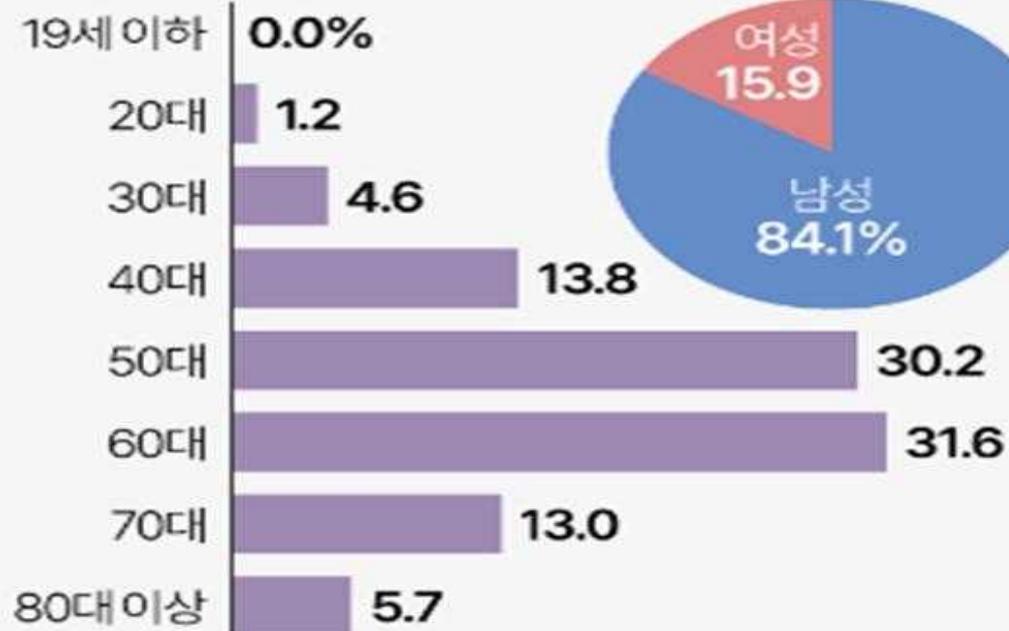
○ 종합검토의견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의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50대~60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출처 :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추이



연령대별 비중



성별 비중



홀로 사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최은영 (8810)	김주형 (88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정환주
연 락 처	02-3153-8834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2024. 2. 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